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437
------	------

2025. 3. 7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이성배 의원(찬성자 3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3.4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기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(안 제7조 제5항)
- 나. 위원회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(중전의 제8조 삭제)
- 다. 위원회의 회의 소집방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[안 제9조(중전의 제10조) 제1항~3항]
- 라. 중전의 제8조 삭제에 따른 조문 이동(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함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상설 운영이 명시된 공정관광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의 시행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공정관광위원회의 비상설화 필요성

-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¹⁾를 위한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1)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관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
2.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
3.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- 최근 5년간 공정관광위원회의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,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 공정관광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 이루어진 위원회 회의가 전무한 실정임.

< 공정관광위원회 운영 현황 >

- 위원구성 : 총 10명(당연직1, 시의원1, 학계3, 연구원2, 법률1, 도시계획1, 유관단체1)
- 임 기 : '22. 9. 1.~'24. 8. 31.(2년)
- 개최 현황 : 총 1회
 -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 제1차 정례회('22. 12. 19.)

- 또한 조직담당관의 <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>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.
- 현재 정부는 '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'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요불급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(안 제7조 및 제8조)

- 동 개정안은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원회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,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 <신설>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위원회는 <u>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
제8조(위원회의 임기) ①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②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	<삭제>

- 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, 행정 여건의 변화 및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.
-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동 개정안의 취지 또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
<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 >

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(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)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.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.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- 또한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

침」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.

- 상기 지침의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표준안 내용이 동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행정안전부 위원회 비상설화 표준안 >

현 행	개정안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(2)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(안 제10조)

- 개정안은 새로운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, 위원회 소집의 주체를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시장으로 정하고,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	제9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	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----- 구성위원 ----- ----- -----.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- 이는 위원회가 비상설화 됨에 따라 안건 논의 이후 자동 해산하므로, 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해산과 함께 그 직을 면하게 되어 새로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 소집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- 시장은 행정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바,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한 자문·의결 사항이 발생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때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시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3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이성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장태용, 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(안 제7조 제5항)
- 나. 위원회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(종전의 제8조 삭제)
- 다. 위원회의 회의 소집방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[안 제9조(종전의 제10조) 제1항~3항]

라. 종전의 제8조 삭제에 따른 조문 이동(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8조를 삭제하고,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10조)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구성위원”으로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<u>제8조(위원회의 임기) ① 당연직</u> <u>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촉직 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<u><삭제></u></p>
<p><u>제9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8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</u></p>
<p><u>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</u></p> <p>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</p> <p>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</p>	<p><u>제9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</u></p> <p><u>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----- <u>구성위원</u> -----</p>
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~ ⑧ (생략)

제11조 ~ 제15조 (생략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~ 제14조 (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(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)를 검토¹⁾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)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	김 중 현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) 문의결과 2022년 1회(서울관광 활성화 계획 및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논의) 개최 후 정기적으로 개최된 바 없어 향후 **안전 발생 빈도가 지급과 같은 추이일** 경우 추가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 향후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**안전이 증가할**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**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** 고려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사례

가. 건 명 :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 참석수당 지급

나. 회의일시 : 2022. 12. 19.(월) 10:00 ~ 11:30

다. 지급대상 : 공정관광위원회 위원 6명

라. 지급금액 : **금 900,000원**(금구십만원)

- 산출내역 : 150,000원(2시간 미만)×6명 = 900,000원

마. 지급방법 : 지급대상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

바. 예산과목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,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,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,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* 자료 : 서울시 관광체육국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(공정관광위원회)(관광정책과-29201)